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64,321,161	217,929,635
일반회계	6,588,951,671	197,668,550
특별회계	675,369,490	20,261,085
기타특별회계	675,369,490	20,261,085
소방특별회계	291,503,407	8,745,1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3,761,602	9,712,848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0,818,367	324,55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481,227	254,43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996,107	59,883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7,103,810	1,113,114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704,970	51,14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063,72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